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4%이고,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9.1%(※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27호, 2017. 3. 20.)로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비인도적인(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3. 25. 시행)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